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(안 제108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초·중등교육법 제6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초·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12만원,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한 시설에 대한 기존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 폐쇄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